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1.0

2022. 11





가이드라인의 활용

본 가이드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활동 및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국가기관 등”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에 활용



Contents

PART 01	민간투자형 SW사업 개요	06
1.	개념	06
2.	배경 및 필요성	10
3.	대상 및 유형	12
PART 02	민간투자형 SW사업 주요내용	18
1.	추진체계	18
2.	적격성 조사	21
3.	우대점수 산정	32
4.	인정심의	36
5.	제3자 제안공고	38
6.	사업자 선정평가	40
7.	협약체결	43
8.	사업관리	44
PART 03	민간투자형 SW사업 유형별 주요추진절차	48
1.	개발형 사업	48
2.	구매형 사업	50
	부록	54
	붙임1 민간투자형 SW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58
	붙임2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요청서	72
	붙임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74
	FAQ(자주하는 질문)	78



PART

01

민간투자형 SW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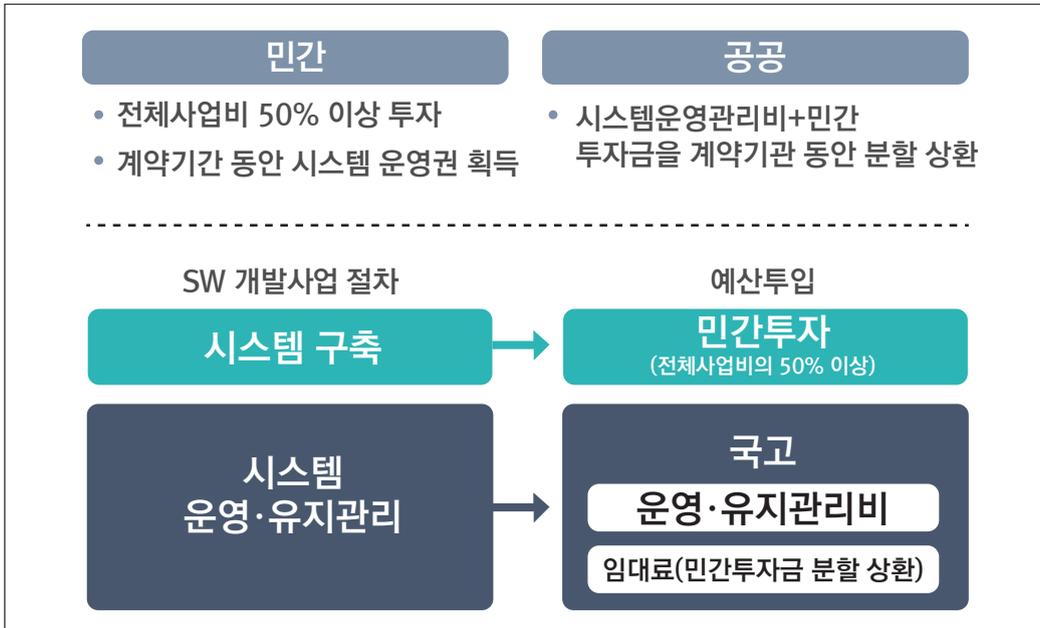
1. 개념
2. 배경 및 필요성
3. 대상 및 유형

01 개념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시스템 구축 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SW사업 (민·관 협력형 SW사업)

- 민간기업이 공공 SW사업의 기획, 구축,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구축된 공공 SW의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개념 (임대형 사업 예)



관련
용어

구분	용어	설명
사업 이해관계자	주무기관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인 행정기관을 말함. 주무기관은 사업의 수행 주체로서 민간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수행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
	전담기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적격성 조사, 사업자 선정 평가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두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투자성과센터에서 수행
	최초 제안자	최초 제안자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첫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의미하며, 최초 제안자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의 우대조건을 부여받음
사업 유형	개발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 유형
	구매형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SW를 공공부문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유형
사업 추진 방식	수익형/임대형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기업이 투자한 비용의 회수 방식에 따라 수익형과 임대형으로 구분 수익형은 SW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 임대형은 국가기관 등이 지급하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
	민간제안/ 정부고시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사업 기획 주체에 따라 민간제안사업과 정부고시 사업으로 구분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주무기관에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 방식, 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사업을 기획하여 고시를 통해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 방식
사업비	전체 사업비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전체 사업비의 구성은 SW개발비, 장비 구입(임차)비, 시스템운영환경 구축비, 운영·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

관련
용어

구분	용어	설명
사업비	시스템 구축비 (SW개발·구축비)	시스템(SW) 구축 기간 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SW개발비, 장비 구입(임차)비, 시스템운영환경 구축비 등으로 구성 (운영·유지관리 단계에 비용은 제외)
	임대료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스템(SW)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스템(SW)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사용료로써 지급하는 비용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정부부담금을 제외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은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조정하여 기준연도 수준으로 조정된 가격을 의미하며, 경상가격은 물가 변동을 제거하지 않는 그 시점의 가격을 의미
기타	제3자 제안공고	민간제안으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초 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요건 등)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일 것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부문(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이 이미 개발(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소프트웨어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 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 제1호 각 목의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 가. 제1호가목의 사업: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 나. 제1호나목의 사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방식 및 비용·수익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① 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
 - 단,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ISP·ISMP 수립절차를 제외하거나, ISP·ISMP 수립 완료 이전 정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가능
 - ISP·ISMP 수립 제외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02 배경 및 필요성

❖ 그간 정부재정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여 공공분야에 필요한 신규 사업들의 추진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 활용 적극 추진

- 건축 등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공공 SW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적용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 SW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공 SW사업에서 민간과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의 이점 적극 활용 및 민간 SW시장 활성화 도모 필요

1) 민간 SW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SW 산업 활성화

- 용역구축(S)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보유한 SW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 가능
- ICT 기술 변화를 고려한 사업 제안을 통해 공공분야의 잠재시장 선점 및 보유 기술에 대한 점유율 확대 가능
- 공공 정보화 사업에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 SW 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 성공적인 민간 SW사업 추진 사례 확보를 통해 유사 사업으로 참여 확대 가능
- 민간 SW사업의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까지의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가능

2)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공공 SW사업에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부가적인 가치 및 新 SW시장 창출 가능
- 민간기업이 공공 SW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
- 국내 SW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 촉진

3) 민간의 우수한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 최신 ICT 기술에 대한 앞선 기술 역량과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운영 능력을 활용하여 공공분야의 시스템 서비스의 품질 혁신 가능
- 기술 발전으로 기존 공공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민간의 기술 활용

4) 공공 SW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최신 ICT 기술의 적용과 개발 복잡도가 높은 시스템 구축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공공 SW사업의 추진 어려움을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완화
- 기존 공공 SW사업의 규제(대기업참여제한, SW영향평가, 상용SW직접구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유연한 SW사업 추진 가능

5)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가재정부담 완화 및 필수시스템 적기 확보

- 민간투자방식은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장기적으로도 재정부담 감소 가능
- 민간의 자본과 기술, 보유한 장비(HW/SW)를 활용하여 사업 예산 절감
-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필수시스템을 빠르게 구축·운영 가능

03 대상 및 유형

○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 SW사업을 대상으로 함

-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의 경우, 업무 연속성, 효율성, 정보 보안, 위기대응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추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

유사 사례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도입 전, 유사 방식으로 추진했던 사례

- 예시1)** 버스정보안내시스템 : 버스에 GPS 및 통신장치 등을 설치해 버스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버스 위치 · 운행상태 · 도착예정시간등의 정보제공
- 예시2)** 서울시 스마트교통카드시스템 : 서울시 ITS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한 결제, 환승,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추진 가능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구분	요건	
① 사업유형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	구매형	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SW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 전체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이외의 부분은 현물로 부담 가능)
② 국민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③ 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민간 협력방법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의 개발 · 운영방식 및 비용 · 수익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민간 협력방법 제시

* 관련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예 시

국민생활 편의 증진 사례

- ① **직접적인 편의 증진 서비스**: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백신접종서비스 구축 등
- ② **간접적인 편의 증진 서비스**: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범정부 행정 플랫폼 구축

예 시

민간·공공 간 협력 방안

[개발형 - 수익형 사업]

- **(개발·운영방식)** A기관은 B기업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B기업은 제공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SW를 개발하고 직접 서비스를 운영
- **(비용·수익 분담)** SW개발비는 전액 B기업에서 부담하고 부담한 개발비와 SW운영비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 이를 위해서 A기관은 B기업에게 개발 후 5년간 운영에 대한 책임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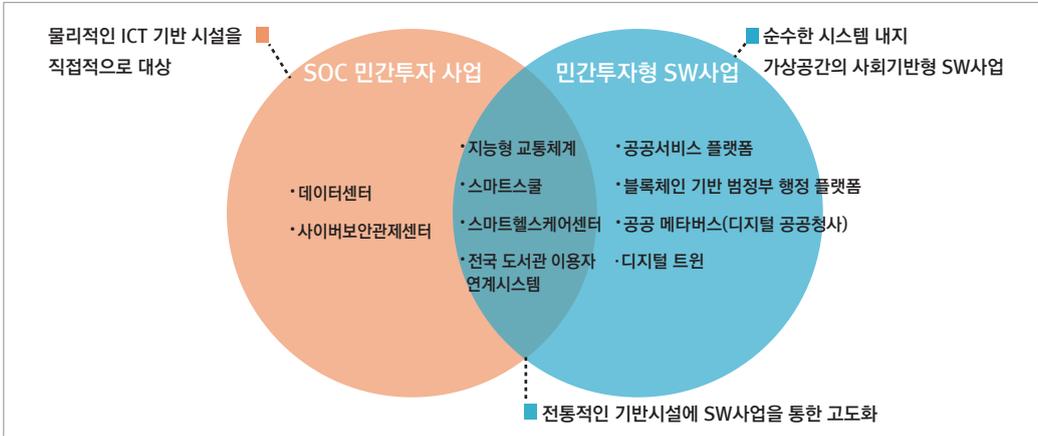
[개발형 - 임대형 사업]

- **(개발·운영방식)** C지자체는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 고심하던 중 자체적인 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에 도입된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였던 D기업과 협의하여 D기업의 기술과 자본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D기업이 5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용·수익 분담)** D기업이 투입한 개발구축비는 5년간 개발된 시스템의 임대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동 기간 동안의 운영유지관리비용은 C지자체가 실소요 비용을 지급(비용·수익 분담)

[구매형 사업]

- AI 전문기업인 E기업은 자체적으로 축적된 의료 데이터 및 이미지 분석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을 통한 X-레이 영상 자동 분석 SW를 개발하고 각 지역 보건소에 보급하려고 담당하는 F부처에 서비스를 제안(기개발 SW의 구매·이용)
- 전국 보건소를 담당하는 F부처는 SW에 대한 검토 후 E기업의 SW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소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SW이용료는 보건소별로 분석 건당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함 (SW사용료)

- 물리적인 시설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SW를 통한 전통적인 기반 시설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 추진의 목적, 절차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근거 법령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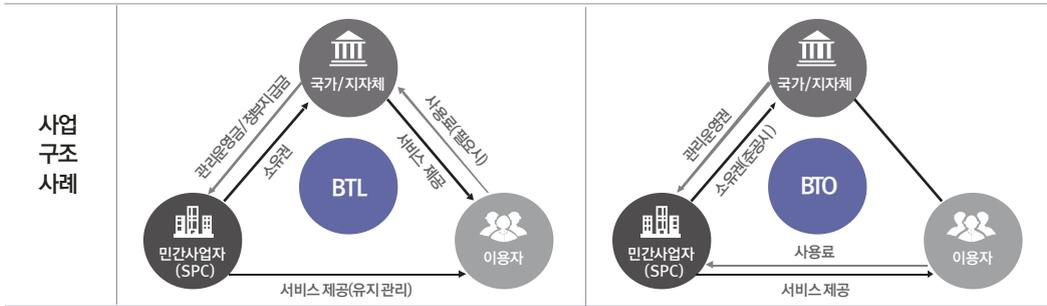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유형은 SW 개발을 포함하는 ‘개발형’과 개발된 SW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구매형’으로 구분됨

- ‘개발형’은 민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 ‘임대형’과 ‘수익형’으로 분류됨

1) 개발형 사업

임대형과 수익형 민간투자형 SW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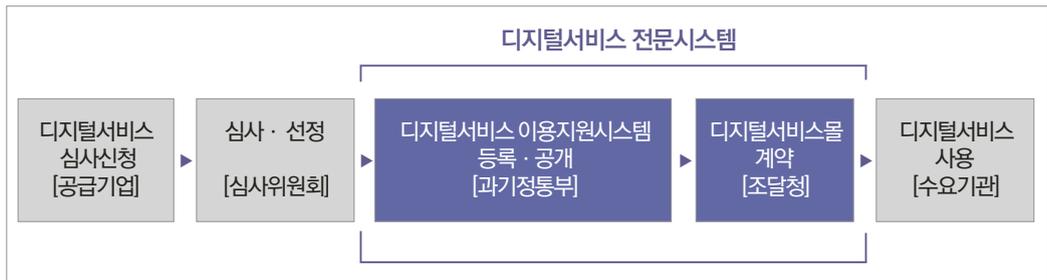
구분	임대형	수익형
정의	● ‘임대형 민간투자형 SW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시스템(SW)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수익형 민간투자형 SW사업’이란 시스템(SW)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대상 사업	● 시스템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	● 시스템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
투자비 회수	● 정부지급금(임대료+운영·유지관리비) - 임대료: 민간 투자비를 계약기간동안 정부로부터 분할 상환받는 비용 - 운영·유지관리비: 계약기간동안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를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용	● 시스템 사용자 사용료



2) 구매형 사례

- ‘구매형’은 ① 민간부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②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면서 ③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 방식
- ① (민간부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 민간법인이 이미 개발한 SW를 대상으로 하며, 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변경사항도 포함됨
- ② + ③ (서비스 형태로 이용 + 사용료 지급) 민간부인이 개발한 SW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예: SaaS)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판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관련 규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지침 제16조제2항

제16조(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참고 SW와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비교

구분	민간투자형 SW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근거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SW사업에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내 SW산업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대규모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 SW사업 <p>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기반시설 (SOC, Social Overhead Capital) <p>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p>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SW) + 하드웨어(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한 장비 ※ 건물, 도로 등 시설은 불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기반시설(SOC) + 소프트웨어(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 (예시 1) CCTV 등 도시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 통합관제시스템 (예시 2) 국방광대역통신망 + 사물인터넷(IoT) 등 모바일 환경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에 접속 가능(지역 무관한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 유형 설정은 가능하나 그 규모를 추정하기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지역의 이동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 유형과 규모를 추정 가능
서비스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 특성상 타분야와의 융합, 타시스템과의 연계, 플랫폼 역할을 통한 사용자 및 콘텐츠 유입 등을 통해 확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건축 등 고정형 시설로 타 분야 또는 타 산업으로 확산과 관련성 낮음
운영·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구축 후에도 사용자 요구나 제도 변경 등으로 지속적인 기능 또는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축한 도로나 건축 등에 대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시설 변경이 적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대상, 사용자 요구, 적용기술, 서비스 융합, 시스템 연계 등 여러 영향 요인들로 인해 SW사업마다 사업내용이 다른 비정형성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 유형에 따라 정해진 공정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는 정형성을 가짐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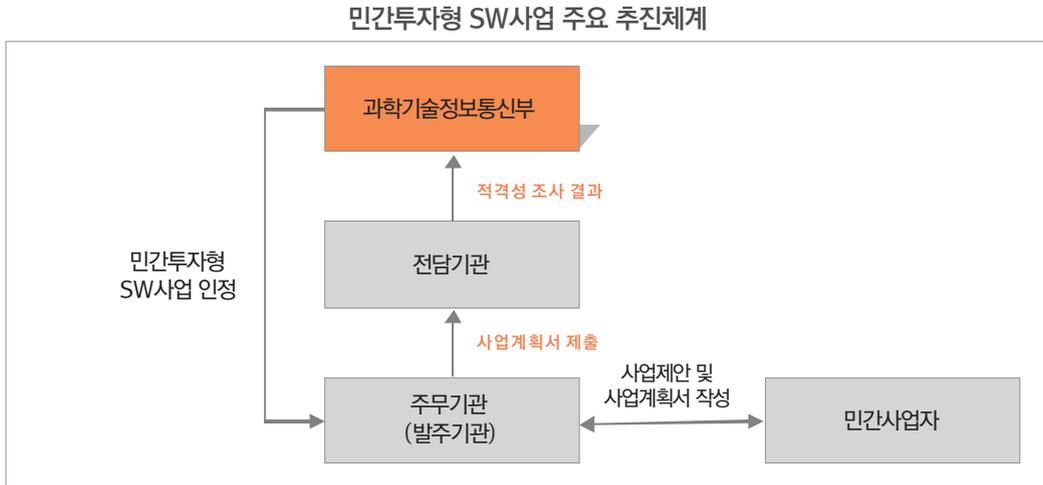
민간투자형 SW사업 주요내용



1. 추진체계
2. 적격성 조사
3. 우대점수 산정
4. 인정심의
5. 제3자 제안공고
6. 사업자 선정평가
7. 협약체결
8. 사업관리

01 추진체계

-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사업 관리 주체인 '주무기관', 투자 및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 적격성 조사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및 제도 운용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추진 체계가 구성됨



1) 주무기관 - 사업 추진 주체

-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 등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해당
-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승인을 받은 기관이 주무기관으로 사업 추진
- 주무기관은 사업의 관리 주체로서 민간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

관련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32조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32조 제3항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민간사업자 - 투자 및 사업 수행

- 민간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SW 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으로 정한 수익 방식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
- 주무기관에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초 제안자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의 우대조건을 부여받음

3) 전담기관 - 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사업추진 지원

- 전담기관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사전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ICT투자성과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 전담기관은 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공고, 사업자 선정평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지원

참고사항**전담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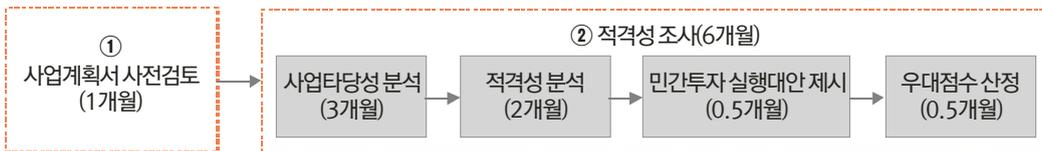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대상사업의 사업제안에 대한 사전 검토
2.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대상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재검증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4.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대상사업의 제안공고 및 사업자 선정평가 관련 업무 지원
5.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및 제도 운용 총괄

- 제도 운용 총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무기관의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서 추진이 적합한지를 심의·인정하고, 그 사실을 주무기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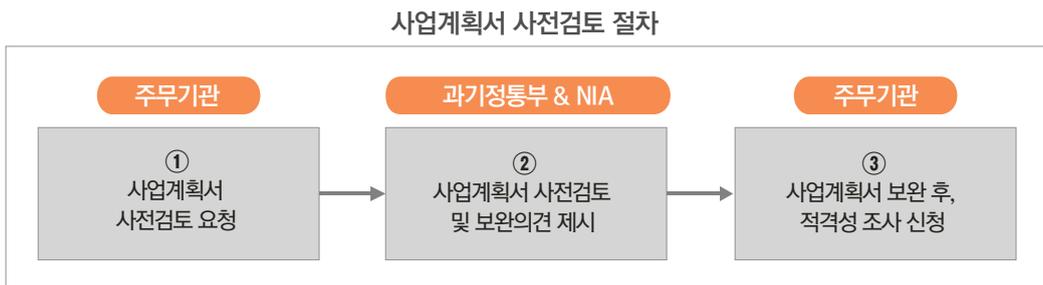
02 적격성 조사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적격성 조사는 4단계(사업타당성 분석, 적격성 분석, 민간투자 실행대안 제시, 우대점수 산정)로 진행되며, 약 6개월 소요
 - 적격성 조사에 앞서 사업계획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및 수정·보완 사항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 약 1개월 소요
 - 주무기관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민간투자형 SW사업 대상 여부 및 적격성 조사 추진 절차 확인 필요



1.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주무기관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계획서가 조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 요청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함



① 주무기관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

- (검토신청) 주무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T투자 성과센터)에 공문(동시시행)으로 신청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비용·편익 산출 근거자료 제출

② 과기정통부 & NIA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보완의견 제시

- 전담기관(NIA)은 주무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사항을 안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항목

검토항목	주요 검토내용
사업계획서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목표와 부합하는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인가? • 사업계획서의 형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비용 및 편익 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요건 이외) 총비용을 구성하는 비용항목의 분류 및 항목별 산출근거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제시된 대가모형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 대가모형 및 대가기준에 따라 비용항목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가? • 사업목표 달성도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구축 후 운영·유지관리와 관련한 재정소요액 추계가 적정한가?
법상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인가?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포함)성을 갖추어 추진 근거가 확보되었는가?

③ 주무기관 - 사업계획서 보완 후 적격성 조사 신청

- 주무기관은 전담기관(NIA)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한 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격성 조사' 신청

참고사항

전체사업비 산정

-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전체사업비는 개발·구축비, 재료비, 운영·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며, 민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임대료, 사용료)은 포함하지 않음
- ▶ 주무기관은 전체사업기간(개발·구축+운영·유지관리) 동안 연차별·이행과제별·비용항목별 상세 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
- ▶ 주무기관은 아래의 비용항목별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전체사업비를 산정하되, 각 비용항목별로 자체 할인율을 추가 적용 가능

전체사업비 항목 및 산출방식

구분		산출방식
SW개발· 구축비	SW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한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정 예산 산정. 단,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투입공수(MM) 방식으로 산정 가능 <p><small>* 사례: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예: AI 분석) FP 적용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관련 개발 과제</small></p>
	장비(HW/SW) 구입(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중 소요되는 HW, SW 구입비로 조달단가, 유사품목의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 견적가를 활용할 경우, 복수 견적을 통해 최저가 적용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도입가격, 임차기간, 연도별 임차료, 임차료 총액 등 관련 자료 포함
	기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비, 조달수수료, PMO 비용 등으로 성격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 조달수수료 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가이드 2.0 등 관련 산출근거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시스템운영환경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형 SW사업에 수반되는 건축 분야 구축비
운영·유지 관리비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용SW관리, 데이터관리, Help Desk 운영,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관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업기간 동안 산정
	유지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SW, HW, 상용SW 유지관리비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업기간 동안 산정
공통	각종 세금 및 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연차별로 계상

* 전체사업비 산정 시 물가 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계상

참고사항

편익 산정

- ▶ 편익을 산출할 경우, 아래의 3가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 ① 직접편익 : 해당 사업의 세부과제를 통해 1차적(직접)으로 발생하는 편익
 - ② 유형편익 : 화폐가치로 산출이 가능한 편익
 - ③ 증분편익 : 편익 산출시 기존(As-Is) 대비 본 사업(To-Be)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의 증분을 산출

- ▶ 사업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편익항목을 설정

- ▶ 편익에 개입되는 제3의 변수*를 적절하게 제거하여 순효과(net effect)를 정확하게 추정 필요
 - * 예시 : ‘교통사고다발지역 안내시스템’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 하락 관련 편익 도출시, 다른 요인(시민안전의식, 줄임쉼터 등)이 개입되어 편익이 과다 또는 과소 추정되는 경우

- ▶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은 편익 산정 시 제외 필요
 - *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전지출이 사회적 총 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제외
(예 : 세금(tax), 정부보조금(subsidy), 은행이자지불 등)

편익항목 예시

유형	편익항목 예
인프라·애플리케이션 구축	업무처리시간 단축, 업무의 정확성 증대효과, 업무처리 소요비용 감소, 업무처리 편리성 증가, 업무처리량 증가, 신규 서비스 제공 등
기존 시스템 개편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절감, 기존 시스템 유지에 따른 위험비용 절감효과 (시스템 중단 등) 등
시스템 연계 및 통합	통합 구축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효과, 통합 업무처리에 따른 편리성 및 서비스 종수 증가 등

* 자료 : KDI(2013).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연구(제2판)

산출식을 통한 편익 추정 예시

편익항목	측정방법
대기시간 절감	· 연간 민원건수 × 건당 절감대기시간 × 시간당 민원인 평균임금
업무처리시간 절감	· 연간 처리건수 × 건당 절감시간 × 시간당 공무원 평균임금
전자제출에 의한 신고비용 절감	· 서류 제출건수 × (인건비+교통비) · 서류제출건수 ÷ 1회 방문당 처리건수 × (인건비+교통비)

* 자료 : KDI(2013).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연구(제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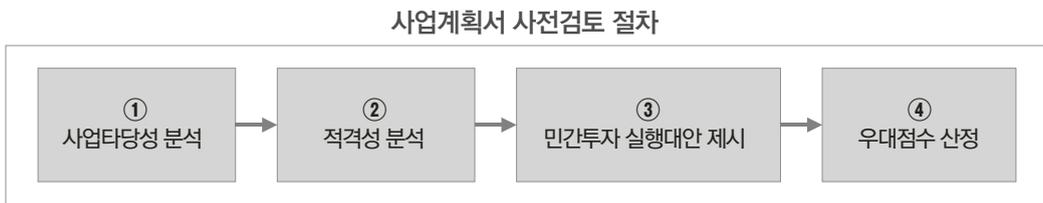
편익항목의 기준값 오류 예시

편익항목 기준값(예시)	잘못된 적용 예시
업무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편익	해당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7급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의 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절감을 과다 추정하는 경우
온라인화를 통한 민원인 교통비 절감 편익	과거 수년간의 직접 방문 민원인 규모의 추세치 또는 평균치를 감안하지 않고 최대치만을 기준으로 편익을 과다 추정하는 경우
재해복구 피해액 절감 편익	기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 비율을 제외하지 않고 피해액을 과다 추정하는 경우

※ (참고자료) 편익항목 도출에 따른 최종 경제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KDI(2013)에서 발간된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연구(제2판)』의 제6장을 참조

2. 적격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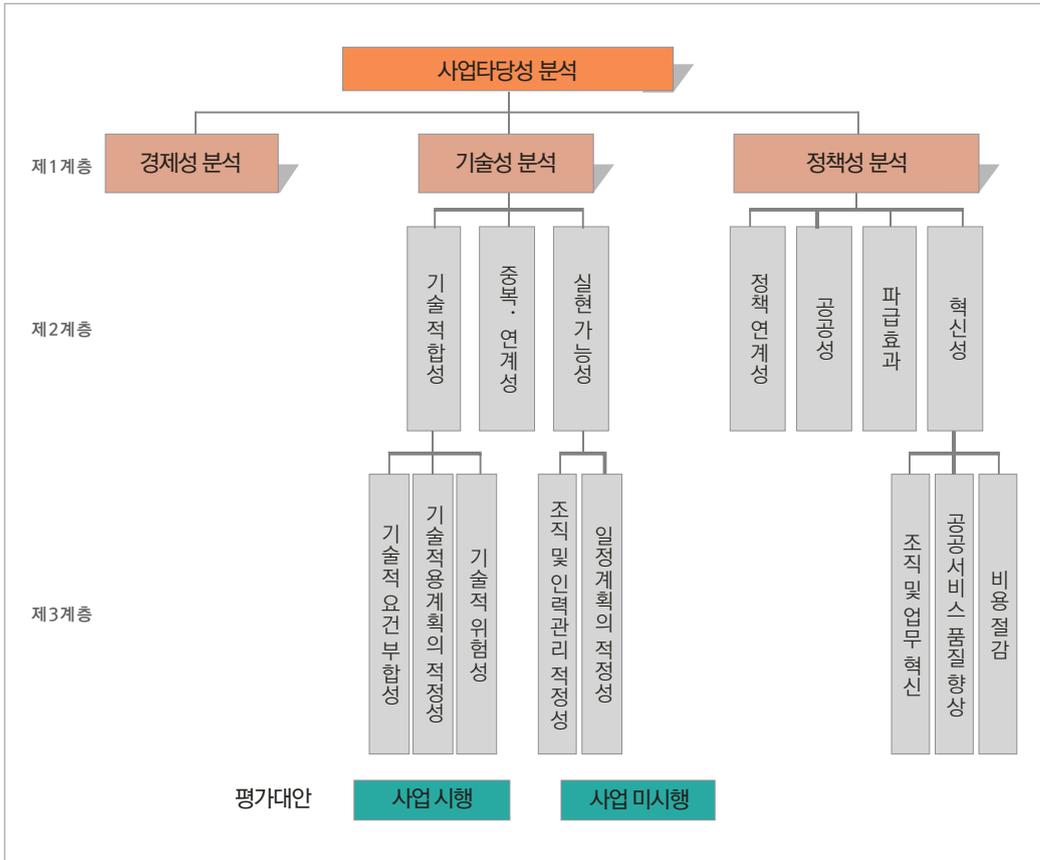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적격성 조사' 신청 방법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 방법과 동일
 - (검토신청) 주무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투자성과센터)에 공문(동시시행)으로 신청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와 ㉡비용·편익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전담기관(NIA)은 아래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격성 조사 수행



① 사업타당성 분석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영역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으로 구성하되, 기술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의 하위 검토항목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적용
-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용편익(B/C)분석 방법을 적용
- **(기술성 분석)** SW개발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의 적용 적합성과 기존 공공분야 시스템과의 중복·연계성을 분석하고, 인력 및 일정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
- **(정책성 분석)**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과 민간참여의 주요 목적인 혁신성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중에 하나인 공공성을 갖는지 검토
- **(종합분석)** '경제성 분석',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층화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
 - * AHP≥0.5일 경우에만 적격성 분석(VFM)을 수행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AHP)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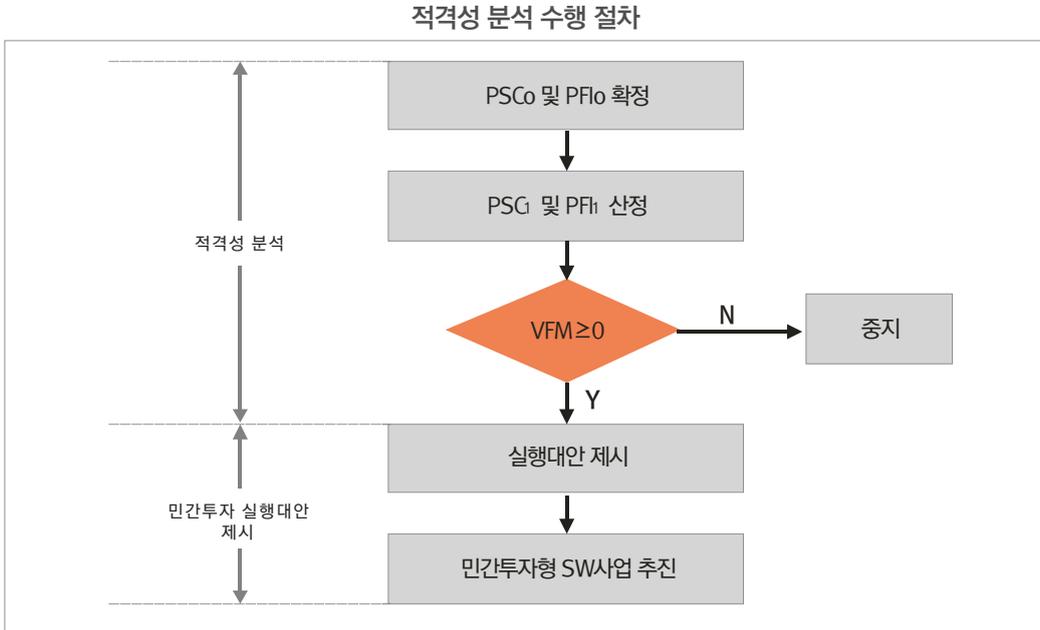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별 검토내용

평가항목		검토내용
경제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였는가?
기술성 분석	기술 적합성	기술적 요건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되는 기술이 사회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확장성이 고려되었는지? 적용되는 기술이 사업 수혜자의 업무요구 특성에 부합하고 기술목표 수준 달성이 가능한가? 장비 용량산정은 적정한가?
		기술적용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되는 기술의 완성도·성숙도, 최신성, 재활용성은 적정한지? 개발 범위 및 시스템 개발방식은 적정한가? 타 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위한 상호연계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타 기관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계획을 확보하였는지?
		기술적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연속성, 안전, 보안 계획 등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사업 생애주기 동안 예측되는 기술적 위험과 그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중복·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한 형태의 기능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타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기 구축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규모의 효율화 및 최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실현 가능성	조직 및 인력 관리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확보 방안은 적정한가?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 체계 합의 수준은 적정한가?
일정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일정 내에 완료 가능성(계약지연, 인력 및 자원의 가용성, 사업의 복잡성, 유사사업 추진 경험 등)은 충분한지? 선결 조건이 있는 타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사업의 일정계획은 현실성이 있는지? 		
정책성 분석	정책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주요 정책, 법령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지?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증진하는 공공성을 갖는가? 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편익을 얻게 되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가? 사업 추진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가? 사업 추진으로 관련 분야의 공정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가? 	

정책성 분석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기술 개발 또는 사업모델의 개발이 촉진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 추진으로 유용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 해당 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공공분야 내·외부 시스템들에서 공동 활용과 민간으로 데이터 개방을 통해 부가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 혁신적인 사업 방식 도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혁신성	조직 및 업무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을 통해 조직운영 및 업무 추진 절차가 혁신적으로 개선되는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우수한 개발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 품질이 기존 대비 향상되는가?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기반(플랫폼, 데이터 등)을 활용함으로써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성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② 적격성 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종합분석 결과 'AHP \geq 0.5'일 경우 적격성 조사(VFM: Value for Money)를 수행



- 적격성 분석은 VFM 분석 1을 통해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비교하여 해당사업을 추진 시 정부실행대안보다 민간투자대안이 더 적격한지를 확인
- 정량적 VFM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을 객관적 비교를 위해 각각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산출하여 현재가치화하여 분석
- 동일한 서비스 수준 제공을 위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정부실행대안(PSC)의 총정부부담금 규모가 민간투자대안(PFI)의 정부부담금보다 크다면 해당사업은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 PSC 정부부담금 규모 > PFI 정부부담금 규모 : VFM 있음
- PSC 정부부담금 규모 < PFI 정부부담금 규모 : VFM 없음

1)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두 가지 사업 방식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낮은 대안을 VFM이 있는 대안이라고 정의하며, VFM분석은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으로 구분되고 이를 종합하여 민간투자 적격성을 판단

- 정성적 VFM은 정량화가 어려운 부분을 정성적으로 비교 분석

정성적 VFM 분석 검토 항목

검토항목	주요 검토내용
서비스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W개발·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 시스템과의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지 여부
계약체결 및 관리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 수준을 포함하여 SW개발·운영 관련 제반 규정이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협상 및 계약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 정부기관의 관리 및 감독의 필요 수준 및 능력 보유 여부 SW 개발 및 운영을 민간에 일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지 여부
위험분담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명확한 위험분담에 따른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사업자 참여로 인해 공공부문으로의 기술 및 경영능력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지 여부
사업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공공성이 강하여 민간부문이 추진하기에 적합·비효율적인지 여부 국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 참조: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 수행 및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05)

- 정량적 VFM분석 및 정성적 VFM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적격성 조사 종합분석을 수행

③ 민간투자 실행대안 제시

-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VFM분석 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격할 경우 또는 민간제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통해 적격한 민자실행대안 추진이 가능할 경우 민자실행대안을 제시
- (민간투자 실행대안 활용) ㉠ 민간투자방식(PFI)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초 제안자의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시된 민간투자 실행대안 반영 필요, ㉡ 주무기관이 적정 사업규모를 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실행대안 분석에서 산출된 정부지급금 규모 및 사용료 수준은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④ 우대점수 산정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 부여가 가능하며, 산정방식에 대해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

03 우대점수 산정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3자공고 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우대점수는 당초 산정점수의 100분의 50 이내로 결정
-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는 민간제한형 사업에 부여되며, 정량평가(VFM 비율) 및 정성평가(제안내용 검토)로 산정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기준

① 정량평가 (VFM* 비율)	② 정성평가				
	수	우	미	양	가
30% 이상	3점 이상	2.2~3점	1.6~2.1점	0.9~1.5점	0~0.8점
20~30% 미만	2.4~3점	1.7~2.3점	1.2~1.6점	0.7~1.1점	0~0.6점
10~20% 미만	1.8~2.3점	1.3~1.7점	0.9~1.2점	0.5~0.8점	0~0.4점
0~10% 미만	1.2~1.7점	0.9~1.1점	0.6~0.8점	0.3~0.5점	0~0.2점

① 정량평가 기준 (세로축)

- 정부실행대안(PSC) 대비 민간투자대안(PFI) 간 비교·분석을 통한 VFM비율로 결정되며, 총 4개 구간*으로 구분

* 30% 이상 / 20~30% / 10~20% / 0~10%미만

② 정성평가 기준 (가로축)

- SW의 창의성, 공공성 등 6개 비계량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며, 각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 산정(100점 만점)
- 총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 90점 미만 80점 이상이면 “우”, 80점 미만 60점 이상이면 “미”, 60점 미만 40점 이상이면 “양”, 40점 미만이면 “가”를 부여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정성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사업계획의 창의성 (20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도입을 통한 창의적 공공 SW사업의 제안 여부 • 사업내용의 창의성(기존 공공부문에 전무했지만 필요한 사업, 대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업, 업무 과정을 대폭적으로 효율화하는 사업 등)
	16	
	12	
	8	
	4	
운영계획의 적정성 (15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재정사업 대비 구축 기간을 단축할 방안 제시 여부 • 구축 후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여부(예시: 클라우드 도입)
	12	
	9	
	6	
	3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15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을 위한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계획(자기자본비율, 이자율 등)의 적정성 • 민간재원의 활용도(총구축비 중 민간투자비율 등)
	12	
	9	
	6	
	3	
SW의 기술 적합성 (15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축 및 유사사업과의 연계를 전제한, SW의 규격 및 포맷을 준수했는지 여부 • 적용되는 기술의 반응성 및 확장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 기술적 위험성의 해소 여부
	12	
	9	
	6	
	3	
사업의 공공성 (20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통한 수혜대상의 보편성 및 편익 증진의 실효성 • 구축 및 운영과정 상 이해관계자 편향 문제의 고려 여부 • 사업을 통한 공정 경쟁의 훼손 여부(공공 SW를 통한 시장독점 문제 등)
	16	
	12	
	8	
	4	
법제도적 정합성 (15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정부정책과 본 사업과의 연관성, 추진근거 확보 여부 •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법적 권리(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침해 여부 및 대응방안 제시 여부 • 운영과정 상 발생하는 데이터 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여부 등
	12	
	9	
	6	
	3	

③ 종합

-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기준'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가 만나는 우대점수 범위를 부여

④ 우대점수 산정 예시

① 정량평가 (VFM* 비율)	② 정성평가				
	수	우	미	양	가
30% 이상	3점 이상	2.2~3점	1.6~2.1점	0.9~1.5점	0~0.8점(1안)
20~30% 미만	2.4~3점	1.7~2.3점(2안)	1.2~1.6점	0.7~1.1점	0~0.6점
10~20% 미만	1.8~2.3점	1.3~1.7점	0.9~1.2점	0.5~0.8점	0~0.4점
0~10% 미만	1.2~1.7점	0.9~1.1점	0.6~0.8점	0.3~0.5점(3안)	0~0.2점

- (1 안) VFM 비율 33%, 정성평가 점수 35점인 경우

☞ 세로축 30% 이상, 가로축 '가'로, 우대점수는 '0~0.8점' 부여

- (2안) VFM 비율 25%, 정성평가 점수 82점인 경우

☞ 세로축 20~30% 미만, 가로축 '우'로, 우대점수는 '1.7~2.3점' 부여

- (3안) VFM 비율 8%, 정성평가 점수 51점인 경우

☞ 세로축 0~10%, 가로축 '양'으로, 우대점수는 '0.3~0.5점' 부여

○ 우대점수 산정 시 정성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단 구성을 통해 산정하며,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단이 산정한 정성평가 점수 중 최소·최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정성평가 등급 산정

정성평가 위원단 구성

위원회 (총 9인)			
사업 시행	민간	학계	전담기관
주무기관	민간 업계 전문가	교수, 연구위원 등	NIA 연구진
1인	3인	3인	2인

- 우대점수 산정 결과는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 '범위값'으로 제시되며, 주무기관은 우대점수 범위값 내에서 우대점수를 최종 결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

관련 근거 우대점수 산정 근거 조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최초제안자의 우대)

- ① 영 제33조제3항의 최초제안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 ② 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대조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평가방법등)

-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배점한도 이외에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

04 인정심의

-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제3차 공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고시하는 절차 준수 필요



① 인정 요청

- 주무기관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정심의 요청
- 인정 요청 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계획서, 전문기관의 적격성 조사 보고서 및 인정 요청서이며, 공문으로 신청(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

② 인정 심의

-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을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총 9인)	
공공(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연구계(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갖춘 사람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학계(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산업계(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련 근거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심의 근거 조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변경된 요건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절차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사업의 공고 4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 제16조제1항의 자료 2.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 제17조제1항의 자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정요청서 및 자료의 적정성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별표4와 같다.

05 제3자 제안공고

-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고시된 사업의 경우, 주무기관은 최초 제안자를 포함한 제3자를 대상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공고 진행
 -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시, ①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②소프트웨어영향평가 대상 제외, ③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적용 받음
- 주무기관은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해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를 작성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는 공고 개요, 사업제한 조건, 사업제한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내용을 포함
 - * 주무기관은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대해 전담기관에 검토 지원을 요청 가능

제3자 제안공고 구성 및 세부 내용(예시)

구성		세부 내용
개요	공고의 목적	• 사전 절차 및 공고 목적
	용어의 정의	• 민간투자형 SW사업과 관련된 용어 정의 • 공고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어 정의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방식, 사업기간, 최초 제안자 등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
사업제한 조건	사업제한 및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한자의 자격, 사업제한의 범위, 사업시행 방식, SW개발 및 운영관련 요구사항,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위험 분담,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주무기관의 지원과 권한위임, 성과요구수준, 기타 사업시행기준
	최초제안자 주요제안내용	• 사업제한개요, 사업의 추진방식, 최초 제안자에 대한 변경요구사항, 최초 제안자 우대접수
	사업제한서 작성기준	• 사업제한서의 기본조건, 전체사업비 산정 방법 등
사업제한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제한서 평가	• 사업제한서 평가항목, 가중치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 평가결과 통보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 우선협상대상자의 준수사항 등
	실시협약 체결	• 실시협약 체결 조건, 절차 • 실시협약 체결 기한
	사업자시행자 선정 및 취소	• 사업자격 철회조건, 제재조치 등

※ 위 항목 외에 기술요구사항, 설명자료 등을 부록으로 제시 가능 [참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업무 매뉴얼' (서울연구원, 2019)

관련 근거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특례조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06 사업자 선정평가

- 민간투자형 SW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주무기관에 제출
 - 제3자 공고문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사업자 선정평가 진행
 - 제안자가 설립 예정인 법인일 경우(SPC)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을 함께 제출
- 선정평가 시 배점은 100점 만점이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성
 - 기술평가는 총 90점, 가격평가는 총 10점으로 합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에서 가중치 및 배점 조정 가능
 - 기술평가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세부 평가항목을 결정 (「부록」 참조)
 - 가격평가의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
 - 최초 제안자의 경우 제3자 공고에 기재된 우대점수를 반영하나, 평가 시 최초 제안계획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우대점수는 당초 산정점수의 100분의 50 이내로 결정
 - 제3자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하 '부대사업'이라 함)은 비용절감요소일 경우 가격평가에 반영하고, 이외의 경우 기술평가항목에 반영하나, 부대사업은 제3자 공고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한함
- 주무기관은 선정평가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 평가 전 자격적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할 수 있음. 또한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발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3자공고문에 명시
 - 주무기관은 선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위원 섭외 등 전문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 * 평가자료 공개 요청은 당해사업의 제안자에 국한하며, 공개대상도 요청한 사업자의 평가결과에 한함(타 제안자 평가결과 열람 불가)

관련 근거 가격평가시 입찰가격 평가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begin{aligned} \text{평점} =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right] \end{aligned}$$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 자료 서울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평가표 사례(수익형 사업)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가자	
계(Ⅰ+Ⅱ+Ⅲ)			100		
I. 정량평가 (20)	1.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최근 1년)	10	사업 담당자	
	2.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평가	5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따라 평가	5		
기술 능력 평가	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전략	• 사업 환경,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2	10	평가 위원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5		
		• 유사분야 경험 및 노하우 적용방안의 적절성	3		
	2.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 사업기간 및 사업일정의 타당성	2	10	
		• 사업의 범위와 내용 및 추진방안	5		
		• 총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3		
	3. 시스템 구축 능력	• 시스템의 성능 - 시스템 표준화 -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방안 - 시스템 호환 및 연계성에 대한 이해 및 구축방안 - 신기술 적용한 표준시스템 도입방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 및 구축방안)	10	30	
		• 기존 데이터 전환(백업) 계획 및 검증방법의 적절성 • 하위 시스템 전개방안 - 집계시스템, RF 단말기, 휴대용정산기, 유인총전기	10		
		• 역사 네트워크 환경 개선 및 전개방안 - 기존 시스템과의 통신환경 개선방안 제시 - 네트워크 환경 개선 이해도 - 지능형 사물인터넷 구축 및 활용방안 제시 - 마스트플랜 반영도	10		
	4.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기간 내 운영계획 적정성 - 위험관리, 일정관리 등 사업관리방안 - 안정적인 운영체계 수립 및 운영방안	5	10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능력 - 비상(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절성 - 시스템별 품질보증의 적절성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5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가격평가 (20)	• 제안 수집수수료율(0.3% 이하)		20	평점산식	
특별제안평가 (3)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제안)	•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 사업 제안(금액)		1.5	3 평가위원	
	•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금액)		1.5		

07 협약체결

○ 협약 전 사전준비

- 주무기관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검토를 의뢰
- 전담기관은 전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발생하는 검토비용은 원칙적으로 주무기관에서 부담
- 협약추진 과정에서 주무기관은 전담기관에 지원 요청 가능

○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 주무기관은 협상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기술·재무회계·법률 등) 외부전문가로 협상단을 구성

민간투자형 SW사업 협상단 구성(예시)

협상단 (총 8~12인)				
주무기관	전담기관	외부 전문가		
협상단장	간사	기술(SW) 전문가	재무·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1인	1인	3~5인	2~3인	1~2인

- 주무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단 구성사항을 상호 통보하고, 협상일정과 협상방법을 협의
- 협상 과정에서 주무기관은 사업계획서, 비용산출근거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성 조사 보고서, 평가자료 및 탈락된 제안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협상 가능
- 협상의 전 과정은 문서화하고 구두 협상 내용은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련 문서는 사업 종료 시까지 양자가 보관
- 협상에 따른 최종 합의 내용을 협약(안)으로 도출하여 가서명

○ 협약체결

- 주무기관은 협약(안)을 전담기관에 검토 의뢰
- 주무기관은 전담기관의 협약(안)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협약서 작성
- 주무기관은 내부 계약업무절차에 따라 계약 진행 및 최종 협약서에 상호 서명

08 사업관리

- 민간투자형 SW사업은 공공 SW사업 관리방식을 준용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① 사업 변경 관리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업 내용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추진단계에서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전체사업비가 변동하거나, 추정 수요량이 감소하는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담기관(NIA)에 민자적격성 재검증을 의뢰

② 사업 보안 관리

- 주무기관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 관련 보안조치를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요청하여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③ 하도급 관리

- SW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승인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요

④ 구축 완료 검사 및 산출물 인수

- 주무기관은 개발이 완료되면 구축 완료 검사를 진행하고 개발의 완성을 확인한 후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참조)

⑤ 하자보수

- 통상의 용역의 경우 개발의 완료를 확인한 후 사업자는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보증으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또는 증권도 포함)을 납부하나,
-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후 운영·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추진되므로, 필요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약 단계에서 규정 고려

⑥ 구축결과물의 지식재산권

- 공공 SW사업의 구축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가 원칙이며,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경우도 협약 단계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는 한 공동소유로 간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참조)

⑦ 서비스 운영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정의하고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지표 개발 필요
- 주무기관은 사업시행자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합의하고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관리



PART

03

민간투자형 SW사업 유형별 주요추진절차



1. 개발형 사업
2. 구매형 사업

01 개발형 사업

- 개발형 사업은 사업기획 주체에 따라, 사업내용을 민간이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과 주무기관이 사업 내용을 기획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구분

민간제안사업과 정부고시사업 비교

구분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① 사업기획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주무기관에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고시를 통해 민간참여
② ISP (정보화전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P 수립 제외* : 민간이 수립한 사업계획서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P 수립 선행 필수
③ 우대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대점수 없음
④ 사업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 경험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적 부합도가 높고, 사업계획에 주무기관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 가능
⑤ 사업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제안) A기업은 B기관에게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 (민간투자)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A기업이 투자 (투자금 회수) 개발비 및 개발 이후 운영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 (민간·공공 간 협력방안) 시스템 구축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사업 추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획) A기업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ISP 수립 (민간투자) 빠른 사업 추진 및 민간 참여를 위해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추진 결정 (민간·공공 간 협력방안)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하고, 민간기업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고시) 사업을 고시하여 참여 민간기업 선정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ISP 수립 제외 가능 사업에 ‘민간투자형 SW사업’ 포함

개발형 사업 추진 절차

(담당주체) 절차		주요 내용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주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주무기관) ISP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제안)주무기관 사업계획서 형식요건등 검토 • (정부고시)주무기관 적격성 조사를 고려한 ISP 수립
▼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충실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법상 적합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보완 사항 안내
▼		
(주무기관) 사업계획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의 사업계획서 보완사항 반영 후, 적격성 조사 신청
▼		
(전담기관) 적격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 적격성 조사 결과 주무기관 통보(부적격 판단 시 종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적격성 조사 대신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필요
▼		
(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및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 조사 통과 후, 주무기관은 과기정통부에 인정 심의 신청 • 과기정통부는 인정심의회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사업 고시
▼		
(주무기관) 사업 예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사업비를 수수료 수익으로 충당하는 수익형 사업은 해당 절차 적용 제외 • 기재부에 적격성 조사 보고서와 함께 사업 예산 요구서 제출
▼		
(주무기관) 제3자 제안공고	(주무기관) SW사업기본계획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예산 국회 확정 후 제안공고 진행 • 적격성 조사의 민간투자 실행대안과 우대점수를 참조하여 제안공고(우대점수는 민간제안사업에만 적용)
▼		
(주무기관) 사업자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에 선정평가 지원 요청 가능
▼		
(주무기관)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에 협약서 검토 지원 요청 가능
▼		
(주무기관)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비용등 주요 변경사항발생시 전담기관 검토 필요

02 구매형 사업

- 구매형 사업은 ①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②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면서 ③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유형

구매형 사업 요건 설명

요건	설명
①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법인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SW를 대상으로 하며, 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② 서비스 형태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기반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③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한 기간(월·연단위), 라이선스, Core 수 등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출하는 방식
④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은 민간투자형 SW사업(구매형)로 고시한 것으로 간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적용)

관련 근거 구매형 사업 관련 근거 조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일 것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부문(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이 이미 개발(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소프트웨어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구매형 사업 추진 절차

(담당주체) 절차	주요 내용
(주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기관사업계획서 형식요건등검토
▼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충실성', '비용편의 산출 적정성', '법상 적합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보완사항안내
▼	
(주무기관) 사업계획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관의사업계획서보완사항반영후, 적격성 조사신청
▼	
(전담기관) 적격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관 적격성 조사 결과 주무기관 통보 (부적격 판단시 종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적격성 조사 대신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필요
▼	
(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및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성 조사 통과 후, 주무기관은 과기정통부에 인정 심의 신청 과기정통부는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사업 고시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 적용사항 예고

①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 및 자체 체크리스트

② 적격성 조사

- 민간투자형 SW사업을 고려한 편익항목 발굴 및 편익 산정 세부 설명
- 기능점수(FP) 및 투입공수(MM) 기반 개발비 산정시 주요 점검사항 및 오류사례 설명
- 민간투자형 SW사업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VFM 평가항목 개선

③ 제3자 제안공고 및 SW사업기본계획고시

- 제3자 제안공고 및 SW사업기본계획고시 항목별 세부작성 방법 및 샘플 제공
- 제3자 제안공고 및 SW사업기본계획고시 전담기관 검토항목 및 절차별 세부 안내
- 제안요청서(RFP) 양식 샘플 제공

④ 사업자 선정평가

- 민간투자형 SW사업 특성을 반영한 사업자 선정평가 항목 샘플 제공
- 사업자 선정평가 세부 진행 절차 및 절차별 운영 내용 설명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점수 산정 방식, 평가위원 구성 설명 및 사례 제시
- 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된 활용 양식 샘플 제공
- 제안서 양식 샘플 제공

⑤ 협약 체결

- 협상 절차 및 절차별 운영 내용 설명
- 분야별 협상 주요 고려사항 설명
- 협약(안) 작성 방법 및 구성 내용 설명
- 협약(안) 전담기관 검토항목 및 절차별 세부 안내

⑥ 사업관리

- 협약 종료 예정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수립 수행절차 및 내용 설명
-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 사업시행조건 조정절차 및 내용 설명
- 전담기관 적격성조사 재검증 사항 및 절차 안내

민간투자형 SW사업 관련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일 것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부문(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이 이미개발(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소프트웨어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 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 제1호 각 목의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 가. 제1호가목의 사업: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 나. 제1호나목의 사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방식 및 비용·수익 분담 등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① 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민간투자형 SW사업 관련 규정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실시

● 제15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절차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사업의 공고 4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 제16조제1항의 자료
 2.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 제17조제1항의 자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정요청서 및 자료의 적정성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별표 4와 같다.

● 제16조(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 ① 제15조제1항제1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
 2.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투자형 SW사업 관련 규정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총사업비 명세 및 민간부문 부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투자 계획 포함)
2.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 명세서
3. 관리운영계획서, 사용료 및 수입·지출계획서
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민간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외의 부분은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체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투입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담을 합한 것으로, 개발·구축비, 재료비, 운영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 제18조(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영 제33조제3항의 최초제안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② 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차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대조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차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

● 단,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ISP·ISMP 수립절차를 제외하거나, ISP·ISMP 수립 완료 이전 정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가능

- ISP·ISMP 수립 제외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이 소프트웨어사업,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인정한 사업



부 록



붙임1 민간투자형 SW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2 민간투자형 SW사업
인정 요청서

붙임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FAQ(자주하는 질문)

「~~~ 구축」
사업 계획서

2022. 0.

00000

I 사업 개요

1.1 일반 현황	00
1.2 사업역량	00
1.3 사업목적과 기대효과	00
1.4 사업 추진근거 및 경위	00
1.5 사업의 주요 내용	00

II 사업 내용

2.1 환경 및 현황 분석	00
2.2 목표 모델 수립	00
2.3 이행 계획 수립	00

III 경제성 분석

3.1 총사업비 및 총비용 산정	00
3.2 수요 추정 및 총편익 산정	00
3.3 경제성 분석	00

IV 기술성 분석

4.1 기술 적합성	00
4.2 중복·연계성	00
4.3 실현 가능성	00

V 정책성 분석

5.1 정책연계성	00
5.2 공공성	00
5.3 파급효과	00
5.4 혁신성	00

VI 재무성 분석

6.1 전체사업비 산정	00
6.2 정부지급금 산정	00
6.3 VfM 분석	00
6.4 재무모델 제시	00

VII 자금 조달계획

7.1 자원조달계획	00
7.2 자기자본 조달계획	00
7.3 타인자본 조달계획	00

I 사업 개요

1. 일반 현황

작성 요령

- ▶ SPC 설립 및 구성업체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등 본 사업 추진체계와 각 참여업체에 대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0 ~~~
- ~~~

2. 사업 역량

작성 요령

- ▶ 제안사의 사업추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적 능력', '사업기획 및 설계능력', '시스템 구축 능력', '시스템 운영 능력', '기타'의 관점에서 보유 기술, 인력,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0 ~~~
- ~~~

3. 사업목적과 기대효과

작성 요령

-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배경)과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0 ~~~
- ~~~

4. 사업 추진근거 및 경위

작성 요령

-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근거 내용 작성 요망
- ▶ 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주요 과정 기술 요망

0 ~ ~ ~
- ~ ~ ~

5. 사업의 주요 내용

작성 요령

- ▶ 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내용을 이행(세부)과제별로 기술 요망

0 ~ ~ ~
- ~ ~ ~

II 사업 내용

1. 환경 및 현황 분석

작성 요령

- ▶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이 되는 문제점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진행한 ‘환경분석(외부요인)’과 ‘현황분석(내부요인)’ 내용 작성 요망
- ▶ 기재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6판)’을 준용하여 작성 요망

0 ~~~
- ~~~

2. 목표모델 수립

작성 요령

- ▶ ‘환경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이행)과제별로 As-Is(현 모습) & To-Be(미래 모습)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 ▶ 목표모델은 이행과제별로 작성 요망
- ▶ 기재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6판)’을 준용하여 작성 요망

0 ~~~
- ~~~

3. 이행계획 수립

작성 요령

- ▶ ‘목표모델 수립’을 통해 구체화된 이행과제들에 대해 각각 이행과제 정의서를 작성한 후에 전체 사업기간 동안 각 과제들의 추진 로드맵(일정) 작성 요망
- ▶ 기재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6판)’을 준용하여 작성 요망

0 ~~~
- ~~~

III 경제성 분석

1. 총사업비 및 총비용 산정

작성요령

- ▶ 정부실행대안(PSC)의 총사업비(구축비 + 구축 후 5년간 운영·운영유지관리비) 산정
- ▶ 정부실행대안(PSC)의 총비용(구축비 + 구축 후 10년간 운영·운영유지관리비) 산정
- ▶ 총사업비 비용 항목은 '개발비', '장비비', '감리비', '조달수수료', '운영비', '유지관리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총사업비관리지침 정보화 총사업비 내역서 참조)

0 ~ ~ ~
- ~ ~ ~

2. 총편익 산정

작성요령

- ▶ 민간투자대안(PFI)의 총편익(시스템 구축 후 10년) 산정
- ▶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를 참조

0 ~ ~ ~
- ~ ~ ~

3. 경제성 분석

작성요령

- ▶ 앞에서 산정한 총비용 및 총편익을 기반으로 B/C(비용편익) 분석, NPV, IRR 산출

0 ~ ~ ~
- ~ ~ ~

Ⅳ 기술성 분석

1. 기술 적합성

작성 요령

- ▶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들에 대해 ‘기술적 요건 부합성’, ‘기술적용 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위험성’,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성

0 ~ ~ ~

- ~ ~ ~

2. 중복·연계성

작성 요령

- ▶ 공공분야의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기능 등에서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성

0 ~ ~ ~

- ~ ~ ~

3. 실현 가능성

작성 요령

-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 및 인력관리’, ‘일정계획’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성

0 ~ ~ ~

- ~ ~ ~

V 정책성 분석

1. 정책 연계성

작성 요령

- ▶ 본 사업의 내용이 국가 주요 정책, 법령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성

0 ~ ~ ~
- ~ ~ ~

2. 공공성

작성 요령

- ▶ 본 사업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성을 갖는지와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공정 경쟁 훼손, 이해당사자 손실 등)에 대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0 ~ ~ ~
- ~ ~ ~

3. 파급효과

작성 요령

- ▶ 본 사업을 통해 데이터 축적·활용·확대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혁신적인 서비스·기술·사업 모델 개발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한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성

0 ~ ~ ~
- ~ ~ ~

4. 혁신성

작성 요령

- ▶ 본 사업을 통해 '조직 및 업무 혁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측면에서 혁신적인 효과 창출이 가능한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성

0 ~ ~ ~

- ~ ~ ~

VI 재무성 분석

1. 총사업비 산정

작성 요령

- ▶ 정부실행대안(PSC)의 총사업비(구축비 + 계약기간 동안 운영·운영유지관리비) 산정
- ▶ 민간투자대안(PFI)의 총사업비(구축비 + 계약기간 동안 운영·운영유지관리비) 산정
- ▶ 물가인상률, 이자율 등 반영

0 ~ ~ ~
- ~ ~ ~

2. 정부지급금 산정

작성 요령

- ▶ 향후 정부가 민간에 지급할 정부지급금(임대형: 임대료 + 운영·유지관리비 / 수익형: 정부지급금 - 운영수익) 산정

0 ~ ~ ~
- ~ ~ ~

3. VfM 분석

작성 요령

- ▶ 앞에서 산정한 정부투자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정부부담액 기반으로 정량적 VfM(Value for Money) 분석

0 ~ ~ ~
- ~ ~ ~

4. 재무모델 제시

작성 요령

- ▶ 앞의 재무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대한 최적의 재무모델 제시(별도 엑셀파일로 제출 가능)

○ ~~~
- ~~~

Ⅶ 자금 조달계획

작성요령

▶ 앞에서 산출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1. 재원 조달계획

0 ~ ~ ~
- ~ ~ ~

2. 자기자본 조달계획

0 ~ ~ ~
- ~ ~ ~

3. 타인자본 조달계획

0 ~ ~ ~
- ~ ~ ~

붙임2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인정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요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 접수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요청인	국가기관명	(주소)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성명/직위		전자우편주소		
요청사업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방식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 방식		
	사업기간 (발주유형 : 택일)	20 ~ 20	<input type="checkbox"/> 단년도 계약 <input type="checkbox"/> 장기계속계약		
	입찰공고 예정일		협약 예정일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전체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백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백만원	
	유지보수	백만원	운영관리	백만원	
	HW 구매	백만원	기타	백만원	
	개발규모 (FP)		투입인력 (M/M)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input type="checkbox"/> 요청기관 제출서류 ·인정 필요성 관련 사업 설명자료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방식 : 제16조제1항의 자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 방식 : 제17조제1항의 자료					

〈인정 필요성 관련 사업 설명자료〉

사 업 명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 등을 작성

2. 주요 사업 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서비스, 사업체계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적 근거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발주, 운영관리 등 연계성 기술

3.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방식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 방식의 해당성(택1)

* 주요사유와 근거를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

4. 인정 필요성

가. 민간의 자본과 기술 활용(영 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영 제32조제1항제2호 관련)

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영 제32조제1항제3호 관련)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요건에 대한 부합 여부 등을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하고 정량지표 활용

5. 기타 사항

* 1~4 항목 이외에 심의에 필요한 내용 적시

붙임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절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 기대사항 ·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한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FAQ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1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과 그 기관을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있는 경우에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제안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A: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제안은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 제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해 기관은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에서 제안을 하면 당해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게 됩니다.

Q2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사업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A: 아니요,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정부부담이 300억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Q3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제안하였을 때 적격성 조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제안서 접수 후 주무기관이 전문기관에게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을 때 전문기관은 약 6개월 정도의 검토 기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단, 사업의 규모, 내용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인정심의를 요청하면 서류 미비 등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요청 후 45일 이내에 심의 후 그 결과를 주무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기간을 제외하면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적격성 조사, 과기정통부의 인정심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8-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제안하였을 때 사업추진 여부, 계획서의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주무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무기관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무기관은 사업추진 여부의 판단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제안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5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시 민간 투자금의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A: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투자금 회수는 임대형 사업과 수익형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형 사업은 시스템 구축 후, 협약에 따라 매년 임대료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반면, 수익형 사업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며, 구체적인 투자금 회수 방식은 주무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협약을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Q6 제안 시 계상해야 할 사업비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사업비는 SW개발비, 장비 구입(임차)비, 시스템운영환경 구축비, 운영·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 1.0

※이 가이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가공하거나 인용 및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민간투자형 SW사업 관련 문의 이메일과 가이드 다운로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투자형 SW사업 문의 이메일 : pppsw@nia.or.kr
-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다운로드 : www.nia.or.kr